



보도자료

▶ 장애인고용과 과장 김경윤

▶ 장애인고용과 서기관 김부희

▶ 2009. 4. 15
▶ 총 2쪽

TEL : 2110-7308
E-MAIL : hee925@molab.go.kr
FAX : 503-9752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 확대 나서기로 -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 달성 계획 추진 -

□ 정부는 2009.4.14. 국무회의에서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를 달성하기로 하였다.

○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은 2012년까지 3% 달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 확대 (5%→6%)

○ 특히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

* 교대·사대 특례입학 확대 노력, 교육청·사대 평가 시 반영 등 검토
* 특히 교원은 '06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적용되고,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증가속도가 완만 ('07년 0.59% → '08년 0.66%)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9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공기관 포함)는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 '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로 상향 조정됨

□ 2008년도 말 공공부문 장애인의 고용은 지난 1년간 기관 평가 강화,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은 14,470명(고용률 1.76%)으로 전년 대비 1,328명, 0.16%p 증가

('08.12.31, 개소, 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계	2.25	1.50 (2.48)	1.60	1.76
중앙행정기관	2.15	1.95 (2.77)	2.02	2.18
헌 법 기 관	1.26	1.25 (1.49)	1.58	1.67
시 · 도	2.30	2.26 (2.43)	2.34	2.68
교 육 청	2.46	0.86 (2.49)	0.93 (2.67)	0.98 (2.66)

* 2006년의 ()는 의무고용직종 확대(교원·판사·기술직 등)전 기준으로 고용률 산정, 2007년 이후 ()는 교육청 중 교사직을 제외한 일반직 기준임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애인근로자는 4,110명(고용률 2.48%)으로 전년대비 71명 0.14%p 증가

* 경영효율화로 인하여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증가

□ 앞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구직자 정보 제공, 모집대행 서비스, 장애인 채용 매뉴얼 보급 등 지원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 특히,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 (법 개정안 '09.3.26. 상임위 상정)

○ 중앙행정기관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지속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에 중증장애인특별채용 등 협조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관의 채용예정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집중적 서비스 제공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 전 부처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1.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1부.
2. 국무회의 보고자료 1부. 끝.

<붙임 1>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 행정안전부 주관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사례

- 중증장애인 18명 특별 채용
 - 7급 5명, 9급 9명, 연구사 1명, 기능직 3명
 - 지체장애 8명, 신장장애 5명, 청각·시각·뇌병변·호흡기·국가유공자 각 1명
- 사례
 - 최고령 합격자인 곽광현(42, 지체장애 2급)씨는 의정부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 업무 담당
 - 안춘목(40, 지체장애 1급)씨는 전국 장애인기능대회에서 웹마스터 장려상 수상 등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립재활원에서 근무
 - 한원민(28, 시각장애 1급)씨는 독학으로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근무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선반안전기술공단)

- (업무)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 및 보급
- (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249명, 장애인근로자수 5명으로 장애인 고용비율 2.01%, 중증장애인비율 20% ('07년 장애인 3명, 1.25%, 중증장애인 0명)
- (내용) '08년 전산직장애인(신장장애2급)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동 근로자가 혈액투석으로 주 2회 오전근무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붙임 2>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확대 방안

2009. 4. 14.



< 목 차 >

I.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 1

- 1. 그간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 2.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현황

II.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상황 평가 3

III.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3

- 1.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추진
- 2.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확대 및 지원 내실화
- 3.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추진

IV. 협조사항 4

【붙임】

- 1. 2008년 국가·지자체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5
- 2. '09~'12 국가·지자체 연차별 장애인 고용계획 8

I.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

1. 그간의 장애인고용 확대 노력

- '91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도입, '00년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적용
 - * '91년부터 '99년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은 노력사항
- '07년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조정 ('09년 시행)
- 국회 “장애인의 고용촉구 결의문” 의결 ('08.12.15.)
 - * (정부)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적극적 노력 촉구, (지자체 및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준수 노력 촉구, (대기업 경영자) 표준사업장 설립 등
- '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범 정부적 노력 전개 ('08.7.1. 국무회의 보고)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평가에 장애인 고용현황 반영
 - (15개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주관 중증장애인 18명 특별 채용
 - (노동부) 정부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과정 지원 및 이행지도
 - * 중앙행정기관 특별채용 중증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7명 18점)
 - * 공공기관 집중적인 이행지도로 2% 미달 기관 13개소 감소(48→35)
 - (각 기관) 장애인공무원 고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 행정안전부·노동부·각 기관 협의를 통해 부처별 채용계획 수립

2.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현황

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붙임 1 참조)

- '08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은 **14,470명**, 고용률은 **1.76%**
- 전년 대비 장애인 공무원 **1,328명 증가 (0.16%p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 큰 폭으로 개선(2.34%→2.68%)

('08.12.31, 개소, 명, %)

구분	기관수	적용대상공무원	장애인 (중증)	고용률
계	79	824,164	14,468 (2,293)	1.76
중앙행정기관	43	172,754	3,774 (609)	2.18
헌법기관	4	20,377	341 (56)	1.67
시·도	16	244,067	6,551 (990)	2.68
교육청	16	386,966	3,802 (638)	0.98

* 47개(59%) 기관이 2% 이상 달성, 15개(19%)는 3% 달성

Ⅱ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 '08년 공공기관 장애인근로자는 **4,110명**, 고용률은 **2.48%**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였으나(4.5%)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는 **71명 증가 (0.14%p 증가)**
 -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큰 폭으로 개선 (2.48%→2.65%)

('08.12.31, 개소, 명, %)

구분	기관수	상시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중증)	고용률
공공기관	100	165,910	4,110 (473)	2.48
공기업	24	91,811	2,147 (194)	2.34
준정부기관	76	74,099	1,963 (279)	2.65

* 65개(65%)기관이 2%이상 달성

Ⅱ.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상황 평가

- '07년도에 비하여 **장애인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
 - **(정부)** 장애인 구분모집, 지방자치단체 평가 등 범 정부적 노력으로 장애인 공무원 증가
 - * '07년에는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으나 '08년에는 0.16%p 증가
 -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집중적인 이행지도로 의무 고용률 2% 이상 달성기관 증가 (52개→65개)
 - * '07년에는 전년대비 0.12%p 증가하였으나 '08년에는 0.14%p 증가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는 감소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부진**
 - **(정부)** 중앙행정기관은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으로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 (18.0%→15.8%, 69명 감소)**
 -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이 다소 증가 (11.1%→11.5%, 24명 증가)
 - * 중증장애인 비율 : 민간('07년 18.5%), 정부(15.8%), 준정부기관(14.2%), 공기업(9.0%)

Ⅲ.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1.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추진

- 중앙부처, 자치단체, 입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는 2012년, 사법부는 2015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 달성 추진**
 - * 매년 그 성과를 분석하여 국무회의 보고 (붙임 2 참조)
-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 모집 비율 확대 (5%→6%)
- 교육청(교원)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특별 대책 마련 ('09 하반기)**
 - * 교대·사대 특례입학 확대 지속 노력, 교육청·교대·사대 평가시 반영 등

2.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확대 및 지원 내실화

-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정부와 동일하게 3%로 상향 조정 (법 개정안 '09.3.26. 상임위 상정)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 대상으로 구직자 정보 제공, 모집 대행서비스, 장애인 채용 매뉴얼 보급 등 지원 강화

3.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추진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으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 (법 개정안 '09.3.26. 상임위 상정)
- 중앙행정기관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지속 보완 및 확대
 - 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에 중증장애인특별채용 등 협조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관의 채용예정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집중적 서비스 제공

IV. 협조사항

- (전 부처)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 달성 할 수 있도록 이미 수립한 장기고용계획을 이행토록 노력
-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 확대 노력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 고용부문 강화, 청년인턴 채용 시 장애인이 배려되도록 협조
 - * '09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경우 청년인턴 27명 중 25명을 장애인으로 채용
-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와 협력하여 장애인 교원 확충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시행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 공공기관에 취업한 국가유공장애인 중 92.8%는 경증장애인

【붙임 1】

2008년 국가·지자체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고용률 순)

('08.12.31 현재, 명, %)

구 분	적용대상공무원	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총 계(79개)	824,164	16,526	14,468	1.76	
중 앙 행 정 기 관	소 계 (43개)	172,754	3,478	3,774	2.18
	국 가 보 훈 처	1,278	26	76	5.95
	금 용 위 원 회	180	4	7	3.89
	국 민 권 의 위 원 회	460	10	16	3.48
	국 가 인 권 위 원 회	208	5	7	3.37
	통 일 부	470	10	15	3.19
	조 달 청	913	19	29	3.18
	병 무 청	1,868	38	58	3.10
	노 동 부	5,727	115	173	3.02
	여 성 부	100	2	3	3.00
	중 소 기 업 청	653	14	19	2.91
	해 양 경 찰 청	669	14	19	2.84
	환 경 부	1,755	36	49	2.79
	국 세 청	20,019	401	547	2.73
	관 세 청	4,429	89	121	2.7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9	3	4	2.68
	식품의약품안전청	1,431	29	38	2.66
	통 계 청	2,358	48	60	2.54
	국 토 해 양 부	5,431	109	137	2.52
	농 촌 진 흥 청	2,042	41	51	2.50
	보 건 복 지 가 족 부	3,643	73	90	2.47
	법 무 부	4,517	91	110	2.44
	문 화 재 청	785	16	19	2.42
	문 화 체 육 관 광 부	2,403	49	58	2.41
	기 획 재 정 부	906	19	21	2.32
	국 무 총 리 실	392	8	9	2.30
	지 식 경 제 부	32,648	653	738	2.26
	공 정 거래 위원 회	493	10	11	2.23

구 분		적용대상공무원	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856	58	60	2.10
	산림청	1,590	32	33	2.08
	농림수산식품부	5,098	102	101	1.98
	법제처	159	4	3	1.89
	특허청	1,511	31	28	1.85
	기상청	1,281	26	23	1.80
	감사원	1,004	21	18	1.79
	대통령실	456	10	8	1.75
	방송통신위원회	1,518	31	26	1.71
	방위사업청	826	17	14	1.69
	교육과학기술부	30,629	613	512	1.67
	경찰청	4,405	89	73	1.66
	국방부	22,960	460	371	1.6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4	2	1	1.56
	소방방재청	332	7	4	1.20
외교통상부	2,138	43	14	0.65	
헌법기관	소 계 (4개)	20,377	409	341	1.6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648	53	58	2.19
	헌법재판소	239	5	5	2.09
	사법부	14,463	290	247	1.71
	입법부	3,027	61	31	1.02
지방자치단체	소 계 (16개)	244,067	4,891	6,551	2.68
	광주광역시	5,514	111	188	3.41
	제주특별자치도	4,258	86	140	3.29
	전라북도	13,964	280	453	3.24
	전라남도	17,693	354	552	3.12
	대구광역시	9,178	184	280	3.05
	경상북도	21,144	423	642	3.04
	강원도	14,008	281	414	2.96
	충청북도	10,758	216	316	2.94
	충청남도	14,611	293	419	2.87
	대전광역시	5,661	114	157	2.77
울산광역시	4,506	91	121	2.69	

		적용대상공무원	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경상남도	경상남도	19,236	385	492	2.56
	경기도	37,585	752	959	2.55
	인천광역시	10,828	217	266	2.46
	부산광역시	13,706	275	309	2.25
	서울특별시	41,417	829	843	2.04
	소 계 (16개)	386,966(62,923)	7,748(1,267)	3,802(1,674)	0.98(2.66)
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21,956(4,853)	440(98)	318(166)	1.45(3.42)
	경상남도교육청	29,214(5,294)	585(106)	411(179)	1.41(3.38)
	강원도교육청	17,428(3,633)	349(73)	229(88)	1.31(2.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870(1,260)	118(26)	76(32)	1.29(2.54)
	울산광역시교육청	10,376(1,596)	208(32)	131(47)	1.26(2.94)
	전라북도교육청	18,506(3,869)	371(78)	216(114)	1.17(2.95)
	충청북도교육청	14,947(3,031)	299(61)	173(88)	1.16(2.90)
	경상북도교육청	23,959(5,139)	480(103)	262(123)	1.09(2.39)
	대전광역시교육청	11,821(1,655)	237(34)	119(46)	1.01(2.78)
	인천광역시교육청	21,546(3,010)	431(61)	215(71)	1.00(2.36)
	광주광역시교육청	10,317(1,622)	207(33)	101(59)	0.98(3.64)
	대구광역시교육청	17,674(2,456)	354(50)	173(84)	0.98(3.42)
	충청남도교육청	20,334(4,063)	407(82)	199(90)	0.98(2.22)
	부산광역시교육청	24,175(3,495)	484(70)	189(71)	0.78(2.03)
	서울특별시교육청	55,415(7,075)	1,109(142)	401(150)	0.72(2.12)
경기도교육청	83,428(10,872)	1,669(218)	589(265)	0.71(2.44)	

* ()는 교육청의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 현황임

【붙임 2】

'09~'12 연차별 장애인 고용계획(고용률 순)

('08.12.31 현재, 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계(79개)	1.76	1.95	2.16	2.34	2.53
소 계 (43개)	2.18	2.36	2.55	2.73	2.95
국 가 보 훈 처	5.95	5.95	5.56	5.40	5.40
금 융 위 원 회	3.89	3.89	3.89	3.89	4.44
국 민 권 익 위 원 회	3.48	3.86	3.86	4.08	4.08
국 가 인 권 위 원 회	3.37	3.37	3.37	3.37	3.37
통 일 부	3.19	3.19	3.40	3.40	3.40
조 달 청	3.18	3.18	3.29	3.40	3.40
병 무 청	3.10	3.16	3.21	3.27	3.32
노 동 부	3.02	3.09	3.16	3.23	3.30
여 성 부	3.00	4.00	4.00	4.00	4.00
중 소 기 업 청	2.91	3.06	3.22	3.22	3.37
해 양 경 찰 청	2.84	3.14	3.14	3.14	3.14
환 경 부	2.79	2.91	3.02	3.14	3.25
국 세 청	2.73	2.92	3.12	3.19	3.26
관 세 청	2.73	2.85	2.96	3.00	3.0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68	2.68	2.68	3.36	3.36
식품의약품안전청	2.66	2.94	3.00	3.14	3.21
통 계 청	2.54	2.70	2.75	2.88	3.01
국 토 해 양 부	2.52	2.52	2.60	2.80	3.00
농 촌 진 흥 청	2.50	2.69	2.79	2.89	3.04
보 건 복지 가 족 부	2.47	2.61	2.74	2.88	3.02
법 무 부	2.44	2.55	2.70	2.86	3.01
문 화 재 청	2.42	2.55	2.68	2.80	3.06
문 화 체육 관 광 부	2.41	2.58	3.29	3.37	3.58
기 획 재 정 부	2.32	2.54	2.65	2.87	3.09
국 무 총 리 실	2.30	2.55	2.81	2.81	3.06
지 식 경 제 부	2.26	2.48	2.65	2.83	3.02
공 정 거래 위 원 회	2.23	2.43	2.64	2.84	3.04
행 정 안 전 부	2.10	2.21	2.45	2.70	3.01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산 립 청	2.08	2.33	2.52	2.77	3.02
농 립 수 산 식 품 부	1.98	2.19	2.34	2.61	3.01
법 제 처	1.89	2.52	3.14	3.14	3.14
특 허 청	1.85	1.99	2.32	2.65	3.04
기 상 청	1.80	2.11	2.34	2.65	3.04
감 사 원	1.79	2.22	2.53	2.83	3.13
대 통 령 실	1.75	1.97	2.19	2.63	3.07
방 송 통 신 위 원 회	1.71	1.84	2.31	2.64	3.03
방 위 사 업 청	1.69	2.18	2.54	2.91	3.15
교 육 과 학 기 술 부	1.67	1.82	2.11	2.45	2.90
경 찰 청	1.66	1.95	2.20	2.45	2.70
국 방 부	1.62	1.80	1.95	2.10	2.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56	1.56	1.56	1.56	3.13
소 방 방 재 청	1.20	1.20	1.51	2.11	3.31
외 교 통 상 부	0.65	0.80	0.98	1.22	1.45
소 계 (4개)	1.67	1.79	2.05	2.30	2.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9	2.34	2.61	2.79	3.02
헌 법 재 판 소	2.09	2.09	2.48	2.86	3.23
사 법 부	1.71	1.76	1.97	2.18	2.39
입 법 부	1.02	1.39	1.88	2.38	3.01
소 계 (16개)	2.68	2.79	2.88	2.97	3.07
광 주 광 역 시	3.41	3.41	3.41	3.41	3.41
제 주 특 별 자 치 도	3.29	3.45	3.48	3.50	3.52
전 라 북 도	3.24	3.26	3.26	3.26	3.26
전 라 남 도	3.12	3.12	3.12	3.12	3.12
대 구 광 역 시	3.05	3.05	3.05	3.05	3.05
경 상 북 도	3.04	3.04	3.04	3.04	3.04
강 원 도	2.96	2.96	2.98	2.99	3.01
충 청 북 도	2.94	3.03	3.10	3.17	3.22
충 청 남 도	2.87	2.91	2.94	2.98	3.01
대 전 광 역 시	2.77	2.83	2.95	3.06	3.16
울 산 광 역 시	2.69	2.74	2.83	2.92	3.00

		2008	2009	2010	2011	2012
	경 상 남 도	2.56	2.63	2.70	2.81	3.00
	경 기 도	2.55	2.66	2.85	2.97	3.10
	인 천 광 역 시	2.46	2.77	2.85	2.90	3.00
	부 산 광 역 시	2.25	2.40	2.55	2.71	2.85
	서 울 특 별 시	2.04	2.29	2.53	2.78	3.01
	소 계 (16개)	0.98	1.24	1.53	1.77	1.99
교 육 청	전 라 남 도 교 육 청	1.45	1.63	1.87	2.12	2.28
	경 상 남 도 교 육 청	1.41	1.56	2.00	2.50	3.00
	강 원 도 교 육 청	1.31	1.56	1.70	1.85	1.9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29	1.36	1.45	1.52	1.62
	울 산 광 역 시 교 육 청	1.26	1.40	2.13	2.48	3.07
	전 라 북 도 교 육 청	1.17	1.34	1.56	1.78	2.05
	충 청 북 도 교 육 청	1.16	1.36	1.90	2.48	3.00
	경 상 북 도 교 육 청	1.09	3.00	2.99	2.98	2.99
	대 진 광 역 시 교 육 청	1.01	1.24	1.70	2.39	3.00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1.00	1.04	1.11	1.20	1.28
	광 주 광 역 시 교 육 청	0.98	1.13	1.23	1.32	1.42
	대 구 광 역 시 교 육 청	0.98	1.14	1.30	1.45	1.61
	충 청 남 도 교 육 청	0.98	1.04	1.24	1.45	1.66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0.78	0.86	0.97	1.08	1.19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청	0.72	1.28	1.85	2.43	3.00
경 기 도 교 육 청	0.71	0.79	0.89	0.94	0.97	